

2021. 3. 29. 의결, 2021. 7. 1. 시행

44 환경범죄 양형기준

2021.
7. 1.
시행

환경
범죄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폐기물관리법]

- 제63조 제1호(제8조⁵³)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버림), 제2호(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
- 제64조 제5호(제25조 제3항⁵⁴)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
- 제65조 제1호(제13조⁵⁵)를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
- 제66조 제1호(제13조 또는 제13조의2⁵⁶)를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제2호

53)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4)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55)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6)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제46조 제1항⁵⁷)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

[건설폐기물법]

- 제62조 제1호(제21조 제3항⁵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
- 제63조 제1호(제13조 제1항⁵⁹)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

[대기환경보전법]

- 제89조 제1호(제23조 제1항이나 제2항⁶⁰)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제2호(제26조 제1항 본문이나 제2항⁶¹)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57)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 58)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 59)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60)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61)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제3호(제31조 제1항 제1호나 제5호⁶²)에 해당하는 행위)

- 제90조 제1호(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제2호(제31조 제1항 제2호⁶³)에 해당하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 제75조 제1호[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⁶⁴]에 따른 배출시설(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등)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 제76조 제2호(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제3호[사업자(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방지시설(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62)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본문 생략)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63)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본문 생략)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4)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38조 제1항 각 호⁶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제77조 제1호[제15조 제1항⁶⁶⁾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림]
- 제78조 제2호(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 제3호(제1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림)

[해양환경관리법]

- 제126조 제1호(제22조 제1항 및 제2항⁶⁷⁾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배출)
- 제127조 제1호(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배출), 제2호(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

65)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본문 생략)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66)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67)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 ②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 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
- 제128조 제1호(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배출)

[가축분뇨법]

- 제48조 제1호(제11조⁶⁸⁾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⁶⁹⁾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⁷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6호(제28조 제1항⁷¹⁾에 따른

68)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단)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69)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0)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본문 생략)

1.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제 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제49조 제1호(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제2호(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4호(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제10조 제 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제50조 제3호(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제4호(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제5호(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6호(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제15조⁷²⁾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71)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영업

또는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9호(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제11호(재활용신고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밑줄 표시된 법 조항은 양형기준 설정(수정) 후 개정되어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으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현 양형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72)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3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4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 건설폐기물법 제62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는 2유형에, 같은 법 제63조 제1호 위반죄(처리기준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는 3유형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위반죄(미신고 폐기물처리 등)는 4유형에 각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2¹ 대기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는 1유형에, 같은 법 제90조 제2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는 2유형에 각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3 | 1 물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3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4월	2월 - 8월	6월 - 10월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78조 제3호 위반죄(분뇨·가축분뇨 등 무단배출)는 4유형에 각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4¹ 해양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3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기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5¹ 가축분뇨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3	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 4월	2월 - 8월	6월 - 10월

▷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50조 제4호 위반죄(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3유형에 각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01¹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가. 제1유형(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림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나. 제2유형(무허가 폐기물처리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	건설폐기물법 제62조 제1호

다. 제3유형(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1호

라. 제4유형(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폐기물 처리기준이나 재활용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폐기물 재활용 또는 수집·운반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02¹ 대기환경 범죄

가.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오염도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나. 제2유형(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시 배출관 등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03¹ 물환경 범죄

가.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나. 제2유형(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②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③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 ④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다. 제3유형(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누출·유출하거나 버림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호

라. 제4유형(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누출·유출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공공수역에 분뇨·가축분뇨 등 버림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3호

04¹ 해양환경 범죄

가. 제1유형(선박·해양시설에서의 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 유해물질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나. 제2유형(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 물질 등 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다. 제3유형(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05¹ 가축분뇨 범죄

가.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p>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②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③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④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 ⑤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줌, ⑥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함, ⑦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림, ⑧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배출(이하 위 ②에서 ⑧까지 7가지 행위를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이라 한다)</p>	<p><u>가축분뇨법 제48조 제1호</u></p>
<p>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유입 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p>	<p><u>가축분뇨법 제48조 제6호</u></p>

나. 제2유형(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유입 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가축분뇨법 제49조 제2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유입 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가축분뇨법 제49조 제4호

다. 제3유형(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가축분뇨법 제50조 제4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람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사람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유입 또는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가축분뇨법 제50조 제5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가축분뇨법 제50조 제6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가축분뇨법 제50조 제9호
재활용신고자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의무 위반	가축분뇨법 제50조 제11호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오염방지시설이 완비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 오염물질을 완벽히 밀폐되거나 분리된 장소 등에서 처리하여 외부 유출 위험성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심각한 수준의 동·식물 폐사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1, 4)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2)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3 중 1, 2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